

(만수보험약관)

제 1 조【보험의 내용】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 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참조)을 드립니다.

1. 생활설계자금 지급일에 살아 있을 때
2. 보험 기간안에 별표 3에 정한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생사 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3. 보험 기간안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생사 불명한 경우로서 회사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4. 보험료 납입 기간안에 별표 4에서 정한 장해 등급 분류표 중 1급에 해당되는 신체장애(이하 "폐질"이라 합니다) 또는 2급, 3급 장해 상태

가 되었을 때. 다만, 장해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예는 사고 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의 장해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2 조【회사의 책임기간】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 1회 보험료 가수증을 교부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후에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 예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 예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였을 때 예는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며, 보험증권의 교부는 승낙의 통지로 봅니다. 또한 제 1항 후단의 경우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건강 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 예는 조사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회사가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 예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 피보험체임이 명백한 경우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 예는 건강조사를 끝냈을 때)로 소급하여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예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되는 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기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
- ④ 회사가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청기예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기산하여 드립니다.
- ⑤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조【가입자가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 ① 보험계약자(이

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건강조사를 받는 계약의 경우 예는 건강조사시) 청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예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계약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1년(건강조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났을 때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후 해지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은 제외)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집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집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 제5조【보험료 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를 유예기간으로 합니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한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계약의 실효를 미리 알리고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험료를 징금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 회사의 징금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지며,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는 회사가 다시 징금하기로 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그 다음날로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실효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실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

3

- 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및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

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8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9조【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금액의 감액
2. 계약자 또는 수의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

4

약정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 1 항 제 2 호중 수의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제10조【생활설계자금, 보험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해약환급금의 청구】 ① 수의자는 제 1 조에 정한 생활설계자금,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생활설계자금, 보험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의자가 생활설계자금,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제11조【생활설계자금, 보험금, 보험료납입면제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10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생활설계자금,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생활설계자금,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생활설계자금,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제 1 조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 환급금(제 3 조 제 3 항, 제5조 제 2 항 및 제 3 항, 제 7 조 제 2 항, 제 9 조 제 2 항 및 제 4 항)은 이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합니다. (별표 2 “해약환급금예시표”참조)

제12조【전쟁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대표자의 지정변경】 ① 계약자 또는 수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의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의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의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합니다.

제14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5조【계약자 대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분쟁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분쟁심의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수 있습니다.

제18조【계약자의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통신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② 제 1 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

보금지급기준표입니다.
제19조【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등을 해드립니다.

(별 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1. 생활설계자금(약관 제1조 제1호)
 - 1 종 : 계약일이후 매년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10%씩 90세까지 지급
 - 2 종 : 계약일 이후 매 2년마다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20%씩 90세까지 지급
 - 3 종 : 계약일 이후 매 3년마다 계약응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30%씩 90세까지 지급

단, 생활설계자금 지급시 단수 기간이 있는 경우 단수 기간 1년을 보험금액의 10%씩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시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때(약관 제1조 제2호 및 제3호)
 - 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시

- 1)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 2)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계약 보험금액의 5배액
- 나. 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고 60세이전 사망 시
- 1)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계약보험금액의 2배액
 - 2)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계약 보험금액의 5배액
- 다. 60세 이후 90세 이전 사망시 : 계약보험금액의 전액
3.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1급, 2급 또는 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약관 제1조 제4호)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별 표 2)

해약환급금 예시표

1 종 { 피보험자연령 40세, 월납 } 기준
계약보험금액 100만원

구분 경과기간	일시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1,430,610	1,346,790	30,280	0	18,230	0	14,490	0
6개월	"	1,388,850	181,680	133,340	109,380	64,530	86,940	43,670
1년	"	1,339,320	363,360	201,680	218,760	64,050	173,880	22,340
3년	"	1,338,640	1,090,080	726,110	656,280	277,830	521,640	141,670
5년	"	1,334,140	1,816,800	1,334,140	1,093,800	518,590	869,400	270,390
10년	"	1,312,330	"	1,312,330	2,187,600	1,312,330	1,738,800	682,490
15년	"	1,263,990	"	1,263,990	"	1,263,990	2,608,200	1,263,990
20년	"	1,162,420	"	1,162,420	"	1,162,420	"	1,162,420
30년	"	1,099,170	"	1,099,170	"	1,099,170	"	1,099,170
40년	"	991,110	"	991,110	"	991,110	"	991,110
50년	"	만기	"	만기	"	만기	"	만기

(별표 3)

대상이되는불의의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 *분류항목* * *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 사고
 4. 기타도로 교통 기관사고
 5. 수상교통 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 기관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1)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 (2) 질병의 진단치료의 목적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1) 세제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
 - (2) 살모넬라성 (Salmonella) 식중독
 - (3) 세균성식중독(포도상구균성 Botulinus성) 기타원인 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 (4)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9.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1) 과도의 고온
 - (2) 고압 및 저압
 - (3) 여행 및 신체 동요에 의한 장해
 - (4) 기아, 갈, 불량환경폭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갈

9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1) 과로 및 격동증의 과로
- (2)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연하장해 또는 정신 신경장애 상태가 있는자의 음식물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 (3)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1) 질병의 진단목적
 - (2) 질병의 치료목적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6.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7.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8.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

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때
	5. 두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10

<p>2급</p> <p>하게 된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10손 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 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또한 다른 한팔이나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 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5 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 되었을 때 4. 두꺼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p>3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손의 5손 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 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 가락을 잃었을 때 	<p>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4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 중 적어도 1손 가락을 포함하여 3손 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5손 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 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 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발의 5발 가락을 잃었을 때
---	--

11

(주) 기)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0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 먹는 것의 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는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어음구성 기능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 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 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 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 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 관절 및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5.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 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재해상해특약약관]

제1조【특약의 내용】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별표 1에 정한 불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별표 2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상해금부금을 드립니다.

상해등급별약정급부금표

상해급수	상해금부금
2급	계약보험금액의 70%
3급	" 50%
4급	" 30%
5급	" 15%
6급	" 10%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종목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상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만을 드립니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상해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상해가 이미 상해금부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상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해금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④ 제2항에 있어서 그 불의의 사고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3항에 규정하는 상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해에 대하여는 이미 상해금부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제3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상해로 상해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상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상해 또는 상해금부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상해
 3. 상해로 인한 급부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 보험금액의 70%로 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상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의 상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2조【특약의 체결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신청에 따라서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로 합니다.
- 3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 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전 까지로 하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70세 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4조【특약보험료 납입면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5조【특약의 실효】 ①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6조【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할 때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구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 제1항의 경우 상해금 부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통산하여 계약보험금의 70%에 달하면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약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상해금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해금부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상해를 입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상해금부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특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특약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기간 중 상해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읍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0조【상해금부금의 청구】 ① 수의자는 제1조에 정한 상해금부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수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상해금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상해진단서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의자가 상해금부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조【특약의 해약 환급금】 이 특약이 실효, 해지 또는 소멸 되었을 경우(제5조, 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해약 환급금은 없읍니다.

제12조【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1)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 교통기관사고.
5. 수상 교통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 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 ② 질병의 진단치료의 목적
 -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 물질에 의한 불의의 종독.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세제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
 - ② 살모내라성 (*Salmonella*성) 식중독
 - ③ 세균성식증독(포도상구균성 *Botulinus*성)
 -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 9.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 10. 불의의 추락.
 -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도의 고온
- ② 고압 및 저압

③ 여행 및 신체동요에 의한 장해

④ 기아, 갈, 불량환경폭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갈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로 및 격동증의 과로
 - ②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연하장해 또는 정신신경 장해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을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 ③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질병의 진단목적
 - ② 질병의 치료목적
 -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 16. 법적개입(만약 처형은 제외한다)
 - 17.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 18.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2)

상해등급분류표

상 해 급 수	신 체 장 해
제 2 급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열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 부터 4 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 부터 4 까지 중 또는 제 4 급의 1 부터 5 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 팔의 3 대 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제 3 급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손의 5 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 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1.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중 적어도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5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p>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p> <p>7. 한발의 5 발가락을 잃었을 때</p>	
제 5 급	<p>1.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 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3 손가락을 잃었을 때</p> <p>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p> <p>3. 한 발의 5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p> <p>4.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p> <p>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1.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p>	제 6 급

19

〈주 기〉

1. “평생 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것의 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어음 구성 기능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 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이란 유동

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상 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별로 했을때 $1/6(a+2b+2c+d)$ 의 값이 80㏈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

이란 비연골의 1 / 20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 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7.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20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라는 것은 경추가 원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 하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자는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 (모자는 말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모자는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관절이하, 견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표중 제1급의 5, 6, 7 또는 8.제2급의

1, 2, 3, 제3급의 5, 또는 제4급의 6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 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 1 조【특약의 내용】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약이 정한 바에따라 피보험자가 별표에 정한 불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신체장애(이하 “폐질”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의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계약보험금액의 전액을 드립니다. 다만, 폐질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의 폐질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 2 조【특약의 체결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신청에 따라서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합니다.

②이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로 합니다.

③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3 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전까지로 하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70세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4조【특약보험료 납입면제】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도 면제됩니다.

제5조【특약의 실효】 ①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할 때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23

② 주계약의 부활청구시 계약자로 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구한 것으로 됩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약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폐질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폐질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폐질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폐

질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특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특약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① 수의자는 제1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수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감증명서)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조【특약의 해약환급금】 이 특약이 실효, 해지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제5조, 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12조【주계약의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 표〉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일어난 질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부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24

분류별 목록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차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 교통기관사고
5. 수상 교통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기관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 ②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 ③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④ 세제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
 - ⑤ 살모네라성 (Salmonella성) 식중독
 - ⑥ 세균성식증독(포도상 구균성 Botulinus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식증독
 - ⑦ 알레르기성 쇠아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

염

9.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도의 고온
 - ② 고압 및 저압
 - ③ 여행 및 신체동요에 의한 잠해
 - ④ 기야, 갈, 불량환경 폭로 및 방치증의 기야, 갈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로 및 격동증의 과로
 - ②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연하장애 또는 정신 신경질
해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을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 ③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질병의 진단 목적

2. 질병의 치료목적

15. 태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폐질
16.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7.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8. 결핵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주) 기)

■ 생간호

환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자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축점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따라 한 눈씩 표정시력에 대하여 축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팔 또는 썰어먹는 것의 장애”

“팔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① 어울구성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획득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살아줄로서 음성
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획득이 되지 않는 경우
③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썰어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획득이 불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 000, 2 000, 4 000㎐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단별로 했을 때 $1/a + 2b + 2c + d$ 의 값이 80㏈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
를 말한다.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이란
비연골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
흡관통 또는 쾌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경관절,
팔꿈치 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 하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 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질간 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 관절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질간 관절(모지는 말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 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 관절(모지는 지질간 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 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 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건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건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정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 등급표중 제1급의 5, 6, 7 또는 8 제2급의 1, 2, 3 제3급의 5 또는 제4급의 6의 장해

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